

구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구 미 시

구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21. . .
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「지방공무원법」 및 「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」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장에게 임용권이 부여됨에 따라 직원 후생복지에 관하여 지방의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,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를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구미시의회 의장과 통합 운영(안 제24조)
- 나.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대상 변경
(안 제4조제2항제1호)
- 다. 조사 시 조화 및 물품 지원 대상 확대(안 제15조제7호)
- 라. 장기근속(명예) 퇴직예정자 국·내외 연수 대상 변경(안 제15조제8호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7조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(붙임)
- 다. 합 의 : 기획예산담당관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구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호 중 “본청·직속기관·사업소·읍면동, 구미시의회사무국”을 “본청·출장소·직속기관·사업소·읍면동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구미시 소속”을 “소속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휴직 중인 공무원

제15조제6호 중 “보육수당”을 “보육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7호 중 “소속 공무원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자녀”를 “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”으로 하며,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사람과 그 가족(배우자 또는 자녀)”을 “사람”으로 한다.

가. 소속 공무원

나.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

다. 소속 공무원 및 배우자의 부모, 조부모, 외조부모

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4조(구미시의회 의장과 통합 운영) 시장은 구미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3조, 제24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“소속 공무원”이란 구미시 <u>본청 · 직속기관 · 사업소 · 읍면동</u> , 구미시의회사무국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. 2. ~ 9. (생략)	제3조(정의) ----- -----. 1. ----- <u>본청 · 출장소 · 직속기관 · 사업소 · 읍면동</u> ----- -----. 2. ~ 9. (현행과 같음)
제4조(적용범위) ① 이 조례는 <u>구미시 소속</u>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.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. 1. <u>질병 · 육아 · 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사유로 휴직 중인 공무원</u> 2. · 3. (생략) ③ (생략)	제4조(적용범위) ① ----- <u>소속</u> ----- -----. ② ----- ----- -----. 1. <u>휴직 중인 공무원</u> 2. · 3. (현행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
제15조(후생복지사업의 시행)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	제15조(후생복지사업의 시행) -- ----- ----- ----- -----.

1. ~ 5. (생략)

6. 미취학 자녀를 둔 직원에 대한 보육수당 지원

7. 소속 공무원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자녀의 조사 시 조화 및 물품 지원

<신설>

<신설>

<신설>

8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가족(배우자 또는 자녀)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·외 연수

가.·나. (생략)

9.·10. (생략)

<신설>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6. -----
-- 보육료 ----

7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-----

가. 소속 공무원

나.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

다. 소속 공무원 및 배우자의 부모, 조부모, 외조부모

8. -----
----- 사람-----

가.·나. (현행과 같음)

9.·10. (현행과 같음)

제24조(구미시의회 의장과 통합 운영) 시장은 구미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.

관계법령

□ 「지방공무원법」

제77조(능력 증진을 위한 사항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·휴양·안전·후생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,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에 협의하여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5. 5. 18., 2021. 10. 8.>

②~④ 생략

구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- 조사 시 조화 및 물품 지원대상 확대(안 제15조제7호)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
 1.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
 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조사 시 조화 및 물품 지원대상을 조부모 및 외조부모까지 확대함에 따라 예산의 소요는 예상되나 조사 발생건수를 예측할 수 없어 구체적인 재정의 추계가 어려우며, 연평균 조사 발생 건수를 고려할 때 예산소요액은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예상됨.

4. 작성자

- 총무과 후생복지담당 강 영 도 (054-480-6791)
- 총무과 후생복지담당 김 정 석 (054-480-6793)

소 관 부 서		총 무 과
입 안 자	과 장	박 주 영
	담 당	강 영 도
	담 당 자	김 정 석 (480-6793)